강원도영월의료원이사회회의록(요지)

강원도영월의료원 기획총무팀

일 시 : 2017년 3월 9일(화), 16 : 00

장 소 : 신관 시청각실

출석 이사 현황(재적 12명, 출석 10명)

양○○, 정○○, 손○○, 채○○, 조○○, 이○○, 이○○, 오○○

서○○, 이○○

기록자 : 김○○

상정안건

1. 2016년 회계결산 병원사업 결산 의결안
2. 정관 일부 개정안
3.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4.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5. 연봉제규정 일부 개정안
6. 직인규정 일부 개정안
7.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
8.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9.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0. 중요장비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11. 회계규정 제6조 및 제12조에 대한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
12. 계정관리규정 제정안
1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 회의결과(요지)

1. 이사회 개회(원장)
2. 일반현황, 병원경영실적, 보고사항 보고(기획총무팀장)

◉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이사 :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시 용역의 시·공간적 범위를 규정 해주면, 용역업체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도의 의견 반영도 필요한데, 구체적인 금액, 위치 등이 나오면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움.

원장 : 용역을 맡은 곳에서 우리의 실정 및 바람과 동떨어진 출발을 할 우려가 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하는 바램이 있음, 또한 여기가 특수한 여건이 있는 지역이고, 용역을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의 주도적인 고민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안이 될 수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렴 수렴.

3. 상정안건 상정 및 제안 설명(원장 및 기획총무팀장)
4. 의결사항

1) 2016년 회계결산 병원사업 결산 의결안

①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결산총괄

가. 자금결산 (단위 : 천원)

자산(A)	부채(B)	자본(C)
7,669,218	8,478,749	△809,531

나. 손익결산 (단위 : 천원)

수익(A)	비용(B)	당기순이익(C)
19,409,832	16,413,298	1,414,600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2) 정관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도 개선

○ 2016년 정기재무감사 지적사항 해소

○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반영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

○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3) 제3항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정관 기구표에 맞추어 업무분장 순서 등 직제 규정 정비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4) 제4항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삭제되었던 신규 직원 채용 직군의 직급 및 직위를 신설.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5) 제5항 연봉제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의사 연봉제 체결 시 연봉금액에는 성과급제에 의한 수당을 포함하지 않음.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6) 제6항 직인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직인관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7) 제7항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예비비 사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 예산집행 품의 규정마련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8) 제8항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취약계층 등 제요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 근거 마련

②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이사 :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세입 증가 및 감소 요인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추정치 분석이 필요함

○○○ 이사 : 협약체결 유관 기관의 의료비 지원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

③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9) 제9항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임직원에 대한 진료지원 및 부당지원에 따른 환수 규정 개선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10) 제10항 중요장비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개정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11) 제11항 회계규정 제6조 및 제12조에 대한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2016년도 정기재무감사 지적된 회계 관계 임직원의 범위 재지정

②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이사 : 이 기회에 감사 지적이라든가 상위 법령이 개

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 등 바뀌어야 될 것은 보완해서 개정 하도록 추진

③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12) 제12항 계정관리규정 제정안

① 주요내용

정보시스템 접속 권한관리 수립.시행 규정 마련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13) 제13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주요내용

당 초 예 산	+	1회 추경	=	총예산
22,002백만원		1,506백만원		23,508백만원

○ 수입예산

– 이월금수입 증액편성 : 1,506,432천원

○ 지출예산

– 법인세 등 증액편성 : 551,934천원
– 유형자산 취득비용
증액편성 : 100,000천원
– 예 비 비 증액편성 : 854,498천원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14) 의사일정 제14항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① 주요내용

□ 고정자산 불용 처분 결정 : ICU전동침대 외 2종 13점

(단위 : 원)

계정과목	수량	구입금액	미상각잔액	비고
의료장비	10	16,681,828	1,668,184	
비품	3	19,280,000	557,000	
계	13	35,961,828	2,225,184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5. 기타

○○○ 이사 : 법인세 절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 비용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원장 :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구 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